

성동구 건설(건축)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

1. 평가기준

- 가.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「성동구 건설(건축)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」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.
- 나.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,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.

평가항목	평가배점	
	1억원 이상	1억원 미만
사업수행능력평가	70점 (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× 70/100)	50점 (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× 50/100)
가격평가	30점 (가격평가점수 × 30/100)	50점 (가격평가점수 × 50/100)
총 계	100점	100점

- 다.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,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.
- 라.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,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.

2. 유의사항

- 가.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,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,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나.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,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「성동구 건설(건축)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」 명부에서 제외하고,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,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.
- 라. 세부평가기준에 포함된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,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.

3.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

가. 사업수행능력평가

평가항목	배점범위	세부기준 및 배점			평가점수	비 고
1. 참여기술인	30점	참여기술인		배점	인원수	
		특급기술자 × 인원 수		4점		
		고급기술자 × 인원 수		3점		
		중급기술자 × 인원 수		2점		
		초급기술자 × 인원 수		1점		
2. 수행실적	20점	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수행 완료(용역 준공) 실적 - 실적 당 2점 × 현장 수				
3. 업무중첩도	30점	성동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	순위	배점		
			1순위	30점		
			2순위	20점		
			3순위	10점		
			4순위 이하	5점		
4. 신용도평가	20점	신용평가등급		배점		
		A- 이상		20점		
		BBB- 이상		16점		
		B- 이상		14점		
		CCC+ 이하		10점		
		미제출		0점		
총 계	100점					

- 1) 참여기술인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직무분야로 평가하며, 직무분야는 건축, 안전관리에 한한다.(중복 불인정)
- 2)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(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점검,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)을 수행 완료(용역 준공)한 건축분야 실적(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)으로 평가한다.
- 3)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, 세금계산서 사본, 완성보고서(반드시 용역 준공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) 등 증빙자료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
- 4) 업무중첩도 평가는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성동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.(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)
예) 지정 이력 없음: 30점, 1건지정: 20점, 2건지정: 10점, 그 외: 5점
- 5) 신용도평가(신용평가등급)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

나. 가격평가

평가항목	배점범위	세부기준 및 배점		비 고
제안가격	100	평균가격 1번째 근접: 100점		
		평균가격 2번째 근접: 97점		
		평균가격 3번째 근접: 94점		
		평균가격 4번째 근접: 91점		
		평균가격 5번째 근접: 88점		
		평균가격 6번째 근접: 85점		
		평균가격 7번째 근접: 82점		
		평균가격 8번째 근접: 79점		
		평균가격 9번째 근접: 76점		
		평균가격 10번째 근접: 73점		
		평균가격 11번째 근접: 70점		
		평균가격 12번째 근접: 67점		
		평균가격 13번째 근접: 64점		
		평균가격 14번째 근접: 61점		
		평균가격 15번째 근접: 58점		
		평균가격 16번째 근접: 55점		
		평균가격 17번째 근접: 52점		
		평균가격 18번째 근접: 49점		
		평균가격 19번째 근접: 46점		
		평균가격 20번째 근접: 43점		
		평균가격 21번째 근접: 40점		
		평균가격 22번째 근접: 37점		

-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,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.
 ※ 평균가격 근접 금액이 동일한 경우 제안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
 예) 제안가격: A기관/100만원, B기관/110만원, C기관/100만원, D기관/120만원
 배 점: B기관/100점, A기관/97점, C기관/97점, D기관/91점
-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(원단위 이하 절사)을 말한다.
 ※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2개소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.
-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.
-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.